

회사 정리

변호사 / 공인회계사 이은종



Contents

I.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II. 투자자와의 계약

III. 미지급 임금 등

IV. 체납세금 등

V. 도산제도 개관



I.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1. 해산 및 청산 절차
2.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
3. 주식회사 정리절차에서의 **Risk**

I.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1. 해산 및 청산 절차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주식회사는 해산절차 및 청산절차를 통하여 소멸됨

해산 절차

- 해산사유 :
 - ①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사유
 - ② 합병 및 분할 등
 - ③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④ 주주총회의 결의

청산 절차

-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청산사무를 수행
- 청산인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청산 종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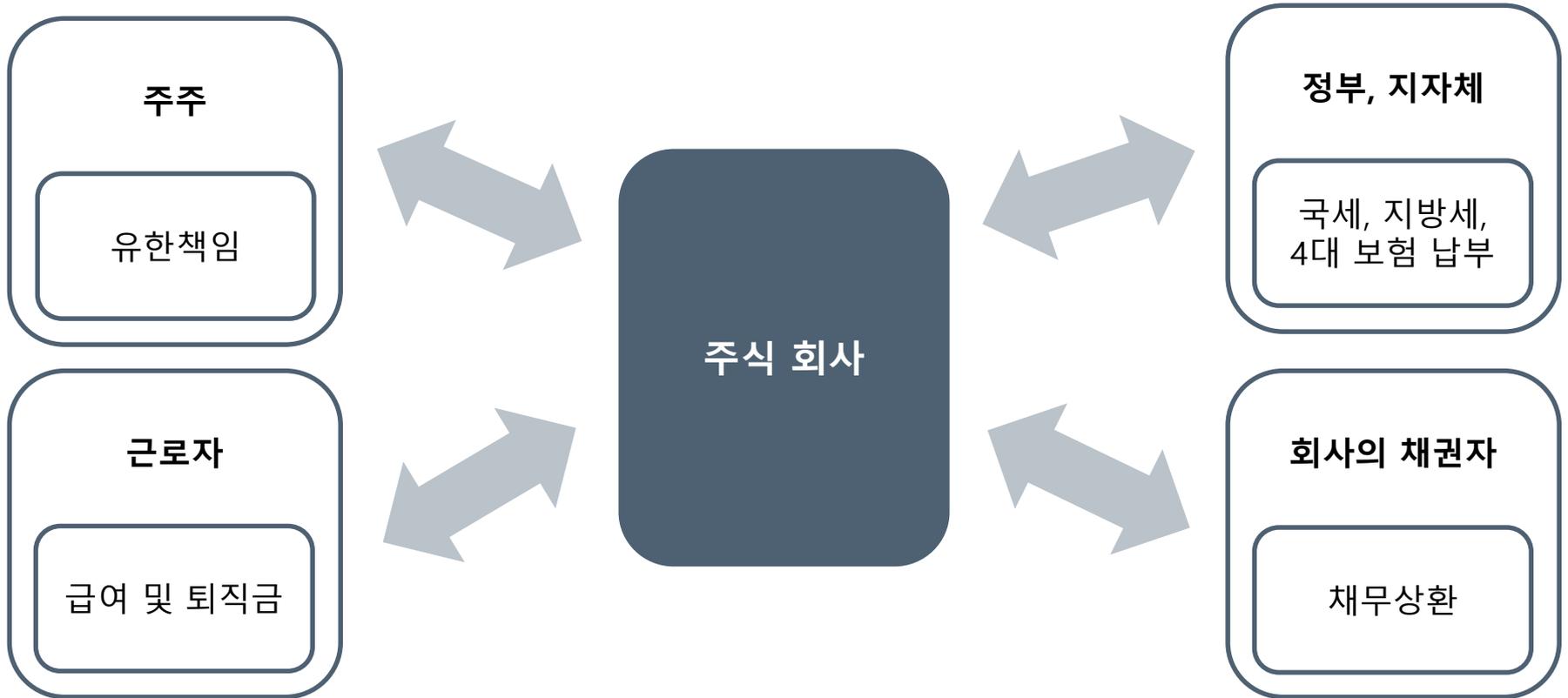
- 회사에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음
- **휴면회사의 해산** : 최후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법원 관보에 공고 후 2월 이내의 신고기간 만료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봄, 그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이 종결한 것으로 봄

I.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2.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

주식회사에는 주주, 근로자, 정부 및 지자체, 회사의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음



I. 주식회사의 법인격 소멸

3. 주식회사 정리절차에서의 Risk

주식회사 정리절차에서의 Risk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에 따라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Risk를 부담할 수 있음

주주

- 외부투자자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경업금지의무 등을 규정해놓은 경우가 많음

근로자

-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미지급 시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부, 지자체

- 과점주주인 경우 국세, 지방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체납액에 대하여 **2차 납세/납부의무** 있음
- 과점주주의 정의

회사의 채권자

-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대하여 사기 고소할 가능성
- 주주 또는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을 경우 미변제 채권액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

Ⅱ. 투자자와의 계약

1. 투자계약서 조항
2. 이해관계인 조항

II. 투자자와의 계약

1. 투자계약서 조항

통상적인 투자계약서 구조(예시)

제1장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1.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2. 진술과 보장(별첨)
3. 투자의 선행조건
4. 인수종결 전 의무
5. 거래완결 전 해제
6. 면책
7. 인수의 완결

제2장 우선주의 내용

8. 우선주의 내용
9. 의결권에 관한 사항
10. 배당금에 관한 사항
11. 청산에 관한 사항
12. 전환에 관한 사항
13. 상환에 관한 사항
14. 신주인수권

제3장 인수종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15.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16.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신회사 설립제한 및 고용
17.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18. 보고 및 자료 제출
19. 기업공개 의무
20. 회계와 업무감사 및 시정조치

제4장 인수종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21. 인수인의 주식처분
22.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제한
23. 인수인의 주식매도선택권
24. 인수인의 우선매수권
25. 공동매도권
26. 주식매수청구권
27.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28. 불가항력

제5장 계약의 종료 등

29. 계약의 종료 및 변경
30.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31. 통지
32. 비밀유지
33. 준거법 및 분쟁해결
34. 이해관계인의 의무
35. 지연배상금
36. 일부 무효
37. 기타

별첨

- 진술과 보장
-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신회사 설립 제한 및 고용 약정서

Ⅱ. 투자자와의 계약

2. 이해관계인 조항

이해관계인

의미

-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핵심인력이 회사 전체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 회사에 투자한 다음 핵심인력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핵심인력을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고 겸업금지, 퇴사제한 등의 계약상 의무를 부과함
- 회사 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묻기 위하여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함

손해배상청구

- 이해관계인이 계약상 규정된 의무(보고의무 등)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겸업금지

- 이해관계인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
- 회사 운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퇴사제한

- 일정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회사 이탈을 금지
- 적절한 기간인지 문제

주식매수청구

-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

Ⅲ. 미지급 임금 등

1. 임금체불 시 절차

2. 체당금 절차

Ⅲ. 미지급 임금 등

1. 임금 체불 시 절차

임금 체불 시 절차

형사절차

-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
- 미지급 시 대표이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은 그대로 종료됨)

민사절차

- 민사판결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한 뒤 사업주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임금 추심
- 사업주 계좌를 가압류하여 현실적인 추심 가능성을 높임(계좌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을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서로 갈음)
-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집행 불가

체당금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국가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심하는 제도
-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에게 구상권 행사 불가

Ⅲ. 미지급 임금 등

2. 체당금 절차

체당금이란

체당금의 의의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산사실인정)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소송상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이 있는 경우

분류

일반 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소액 체당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Ⅲ. 미지급 임금 등

2. 체당금 절차, 계속

■ 체당금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2호)

(2017. 7. 1.부터)

- 일반체당금

(단위 : 만 원)

구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퇴직급여	180	260	300	280	210
휴업수당	126	182	210	196	147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

- 소액체당금 : 400만 원(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5. 7. 1.부터)

- 소액체당금 : 300만 원

Ⅲ. 미지급 임금 등

2. 체당금 절차, 계속

지급대상 근로자

일반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소액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

Ⅲ. 미지급 임금 등

2. 체당금 절차, 계속

적용대상 사업주

일반체당금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법 제7조제1항제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액체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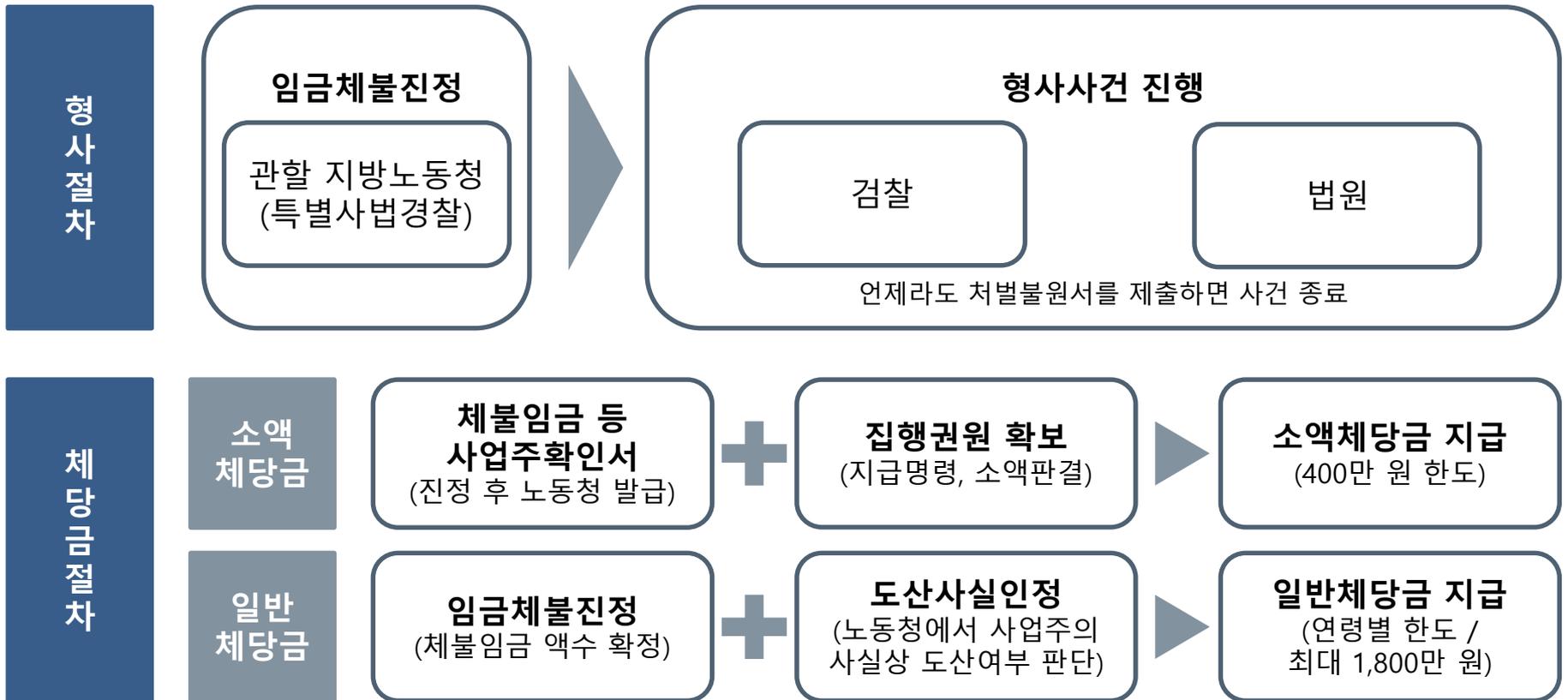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주
 1.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2.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다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이하 이 호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라 한다)인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直上) 수급인(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다.
 3.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등을 받았을 것

Ⅲ. 미지급 임금 등

2. 체당금 절차, 계속

체당금 절차 흐름도



IV. 체납세금 등

IV. 체납세금 등

2차 납세 / 납부 의무

법인에 국세 또는 지방세,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 또는 납부 의무를 짐

국세 또는 지방세

과점 주주
2차 납세 의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과점 주주
2차 납부 의무

IV. 체납세금 등

과점주주

과점주주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는 자들의 지분을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주주를 말함(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기본법 제46조, 국민연금법 제90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친족관계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경제적 연관관계

-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위 두 경우의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개인인 경우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법인인 경우 :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①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V. 도산제도 개관

1. 해산 및 청산 절차
2. 주식회사의 이해 관계자
3. 주식회사 정리절차에서의 **Risk**

V. 도산제도 개관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 법인파산 절차의 개요



V. 도산제도 개관

1. 법인파산 / 개인파산, 계속

개인파산 절차의 개요



V. 도산제도 개관

1. 법인과산 / 개인파산, 계속

파산의 원인, 기각사유 및 파산선고의 효력

파산의 원인

- 보통파산원인 :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 법인의 파산원인 : 그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

파산의 기각사유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파산선고의 효력

-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및 권리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부동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는 제외)
-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에게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 / 그 사실을 알고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내에서 파산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V. 도산제도 개관

1. 법인과산 / 개인과산, 계속

면책 신청 기각 사유 및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신청 기각 사유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면책 불허가 사유

(다음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허가하여야 함)

- 채무자가 사기파산죄, 파산증뢰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 이전에 면책을 받았던 경우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한 때

V. 도산제도 개관

2. 법인회생 / 일반회생

회생 절차의 개요



V. 도산제도 개관

3.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의 개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매달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채무총액 :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함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음(2018. 5. 부터는 3년으로 변경)
- 소유하고 있는 재산가치보다 변제액이 많아 야 함



V. 도산제도 개관

3. 개인회생, 계속

생계비 기준액

생계비 기준액

- 매월 변제할 금액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월 변제액 = 매월 수입 - 생계비)

- 가계 중위소득의 60%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음

- 2018년 현재의 생계비 기준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03,263	1,708,258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Case study

법인

주식회사 xx

- 게임회사, 2017. 중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던 게임이 있었으나 싸드 사태의 여파로 중국 출시가 무기한 연기, 국내 출시하였으나 매출이 적어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음

- 주주 구성 : 대표이사 40%, 대표이사의 친형 35%, 공동창업자 25%

- 부가세 체납액 1억 원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5천만 원 체납 중

구분	2017
[유동자산]	2,500,000
· 당좌자산	2,500,000
· 재고자산	-
[비유동자산]	2,033,000,000
· 투자자산	-
· 유형자산	13,000,000
· 무형자산	2,000,000,000
· 기타비유동자산	20,000,000
자산총계	2,035,500,000
[유동부채]	900,000,000
[비유동부채]	200,000,000
부채총계	1,100,000,000
[자본금]	150,000,000
[자본잉여금]	2,850,000,000
[자본조정]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미처리결손금]	(2,064,500,000)
자본총계	935,500,000
부채및자본총계	2,035,500,000
매출액	100,000,000
영업손실	(720,000,000)
당기순손실	(720,000,000)

개인

주식회사 xx의 대표이사

- 1977년생, 명문 사립대 졸업
- 2006년부터 3개 회사를 거치며 계속 게임개발자로 경력을 쌓음, 2013년 주식회사 xx를 창업
- 회사채무 중 9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 / 개인 채무 1억 5천만 원으로 회사에 자금 투입
- 2003. 결혼, 배우자는 2002.부터 꾸준히 한 직장에서 월 200 ~ 350만 원의 소득을 올림, 2013년 창업한 이후 배우자가 가계를 꾸렸고 대표이사는 집에 돈을 거의 주지 못하였음
- 본인 명의 재산 : 현재 거주 중인 집의 전세보증금 2억 원(서울 소재), 2015년식 중형차 1대(시가 1,500만 원 정도), 보험(예상해약환급금 1,000만 원)
- 배우자 명의 재산 : 예금 5천만 원, 보험(예상해약환급금 5천만 원), 부동산 3억 원(결혼 전 장인으로부터 증여)
-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다른 회사에서 3개월 단위로 단기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Thank you.